

모두의 창업 글로벌 재외국민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공고(안)

해외AC 등과 연계하여 유학생 등 재외국민의 창업준비와 성장을 지원 하는 『모두의 창업 글로벌 재외국민 프로그램』에 참여할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.

※ 본 공고는 **모두의 창업 글로벌 재외국민 프로그램**에 참여할 참여자를 모집하는 **공고문**이며,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중복지원*은 불가하오니,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* 신청은 가능하나, 지원은 먼저 선정된 1개 프로그램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음

2026년 8월 12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※ K-Startup 누리집 가입시 실명인증을 위해 국내 주민번호와 국내 전화번호를 소지하여야 합니다. 부득이한 경우, 해당 국가의 총영사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을 통해 가능합니다.

- 총영사관 실명등록 대상 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

☞ K-Startup 누리집 > 고객센터 > 일반매뉴얼 > K-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

※ 본 지원에 따른 현지 세법 적용, 비자 자격 유지 등 개인별 법적·행정적 사항은 본인의 책임하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.

※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(기업)는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동 사업에 대한 '협약 체결 약속서'를 제출해야 합니다.

※ '공공마이데이터' 정보제공 동의 시,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. * 접수방법 - 제출서류 참고

1

사업개요

- ☐ **사업목적** : 해외에 거주 중인 유학생 등 재외국민(한국 국적 필수)을 대상으로 멘토링, 현지AC 등을 통한 보육프로그램, 창업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준비와 성장을 도모

□ **지원대상** :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해외에 거주 중인 유학생 등 예비 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해외 진출 창업기업*

- * 창업기업의 경우, 국내(한국)의 사업자등록일과 해외 사업자등록일 중 먼저 설립된 기업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공고일 기준 업력이 7년 이내인 경우를 의미함.
- * '국외창업요건'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기업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,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비창업자로 지원하여야 함.
- * 해외 거주자, 영주권자 모두 지원 가능하나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지 않아야 함.

□ **협약기간** : 협약 시작일로부터 약 3개월 (협약일~'26.12월 예정)

□ **선정규모** : 80명(개사) 내외

구 분	미국			싱가포르	인도 (벵갈루루 등)
	실리콘밸리		뉴욕		
특화분야	AI·딥테크	K-컬처 콘텐츠	바이오	딥테크 및 AI	딥테크
선정규모	20개사	15개사	5개사	20개사	20개사

- * 국외 전(全) 지역에서 실리콘밸리, 뉴욕, 싱가포르, 인도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으나, 신청 및 선정된 자(기업)는 프로그램/평가가 운영되는 현지에서 참여하여야 함

2

지원내용

□ **지원내용** : 멘토링(최대 4회)·세미나, 현지 보육프로그램(4주 내외), 창업 활동비(예비창업자 20백만원 한도, 창업기업 30백만원 한도)

- 멘토링·세미나 : 현지 한인 선배 창업가 및 현지 투자사 등의 온·오프라인 멘토링(최대 4회) 및 현지 창업생태계 설명 세미나
- 현지보육 프로그램 : 국가별 AC를 통해 현지 사무공간 제공, 법률·세무·시장 등 전문가 연계 등 전문 보육프로그램 (4주 내외)

* AC를 통한 국가별·지역별 보육방식은 현지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예정

* 선정자(기업)의 상황과 성장단계 등을 고려하여 지원내용과 방식을 차별적으로 운영 예정

<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및 방식(안) >

구 분	프로그램(멘토링·세미나, 보육)	창업활동비	
		비목	한도
예비창업자	아이디어 구체화, BM개발 등	여비, 지급수수료*	20백만원 (선집행 후 국내 개인계좌 입금)
창업기업	판로개척, 제품(서비스) 개선 및 검증 등	인건비, 여비, 지급수수료	30백만원 (전용계좌 및 카드 활용, 승인-집행)

- * 지급수수료 : 전시회 참가비, 통번역비, 운반비, 보험료, 보관료, 법인설립비, 차량임차비, 회계감사비, 광고선전비 등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소요되는 비용

※ **창업활동비는 창업활동과 목적에 맞게 활용하여야 하며, 집행 또는 집행예정 자금이 100%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**

※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래 비목은 지원이 불가하오니, 신청시 미리 확인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.

< 창업활동비로 지원(집행)이 불가능한 항목 >

- 1) (인건비) 협약기간 내 소속직원의 인건비에 한하여 지원, 대표자의 인건비는 지원 불가하며, 현물로만 부담 가능
- 2) (식비, 팁) 회의비, 업무추진비 등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 불가
- 3) (부가세·관세) 한국부가세 및 관세 등 환급 가능한 세금은 지원 불가
- 4) (송금수수료) 사업비 해외집행시 발생하는 수수료(카드 및 계좌이체)는 지원 불가
- 5) (자산취득비) 노트북 등 자산성 물품 취득비는 지원 불가, 렌탈료로 가능
- 6) (기타) 창업활동 및 목적과 무관한 비용, 집행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비용 등

3

신청자격 및 요건

□ 신청자격

-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해외에 거주 중*인 유학생 등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해외 진출 창업기업

* 공고일 기준 해외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자(단, 여행자비자 등 단기체류의 거주는 제외)

- 예비창업자(신청일 현재 국내(한국)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)

* 단, 유학생의 경우 비자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창업활동비 지원 가능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, 제2조제3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

◆ 신청가능 창업(설립)일 기준 : 2019년 8월 12일 이후 창업한 기업

- 창업일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이며, 신청 시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로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(지점은 신청 불가)
- 창업기업 여부 판단 관련 「(참고1) 창업여부 기준표」 참고
- 팀 창업의 경우, 대표자 중 1인은 한국인으로서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 가능
-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을 보유한 경우,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
- 해외법인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2의2.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국외 창업 요건을 준용하고, 사업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설립한 기업

□ 신청 제외 대상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
< ①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 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< ②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(기업)

< ③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
2.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
3.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(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 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)

④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 ([참고2]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)

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(창업진흥원)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, 2026년 중앙부처의 글로벌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 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* 「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-648호)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해외진출 및 현지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,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

** 단, 동 공고사업과 '동일연도'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

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
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
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(예비창업자의 경우 지정 은행이 아닌 국내 본인 계좌 보유시 가능)

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 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
⑨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

⑩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⑪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□ 의무 및 역할

- 선정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및 「중소기업 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*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 중 창업기업은 자기부담사업비(현금)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(예비창업자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)

< 총 사업비 구성(100%) = 정부지원사업비(70% 이하) +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(30% 이상) >

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
	현금	현물
총 사업비의 70% 이하	총 사업비의 10% 이상	총 사업비의 20% 이하

- 신청 및 선정(예정)자는 전문기관(창업진흥원), 주관기관, 창업진흥원 및 중진공의 현지사무소, 현지AC 등의 요청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
-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, 사업비의 유용·횡령·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(선정자)에게 있고,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- 신청 및 선정, 선정 이후에도 지원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요건미달 등이 확인될 경우, 선정(협약) 취소될 수 있음.

*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창업기업 확인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.

- 해당 국가에서의 비자문제, 소득세, 부가세 등의 세금에 관한 모든 의무와 책임은 신청자 또는 선정자에게 있음

4

접수방법

□ **접수기간** : '26. 8. 12(화) ~ 9.14.(월), 18:00까지 *한국시간(KST) 기준

< 유의 사항 >

- ① **신청마감일 1주일 이전에 'K-Startup 누리집'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**
* 신청·접수는 **18:00 정각에 종료** (신규 신청 불가).
- ② 온라인 신청서 제출(작성완료) 이후 접수완료를 반드시 확인.
- ③ **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**하고, 접수된(18:00이후)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**수정 및 삭제 불가**

□ 접수방법

- 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·접수(www.k-startup.go.kr)

- 신청·접수 시,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**실명인증** 및 ② **기업인증**을 실시하여야 하며,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

* **실명인증** :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 등을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(외국인, 개명인,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)

** **기업인증** : 공동인증서(기업용), 금융인증서, SCI기업실명인증,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

***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'[별첨] 사업 신청 매뉴얼' 참고

< 유의 사항 >

- ① **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**해야 하며, **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**
- ② K-Startup 누리집 **신규 가입 시**,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**본인 인증 필수**. **서울신용평가정보(SCI)**에 실명(개명)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K-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, 사전에 가입 신청 및 영사관을 통해 공동인증서 발급 필요

□ 제출서류

○ 사업계획서 1부 (별첨양식)

- 사업계획서 양식은 제공되는 MS WORD와 한글, PPT 등으로 작성 가능하나, 'PDF로 변환'하여 제출(단, 제공된 사업계획서 양식과 동일한 항목으로 작성)

○ 기타 제출서류 :

제출시기	구분	제출서류	제출 방법	비고
신청·접수	필수	① 사업신청서	온라인 입력	-
		② 사업계획서	(별첨) 양식에 작성 후 시스템에 업로드	용량제한 30MB (8페이지 이내)
		③ 자격요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	(별첨) 양식에 첨부하여 시스템에 업로드	요건검토 서류는 서류평가 이후 징구
		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(구, 법인등기부등본)		-
	해당시	⑤ 공동 또는 각자대표 동의서		공동/각자대표 해당
	필수	⑥ 신분 확인 서류	공공마이데이터 '동의' 시 서류(행정정보) 자동 제출	공공마이데이터 '미동의' 시 (별첨) 증빙서류 양식에 별도 첨부하여 시스템 업로드
		⑦ 사업자등록증명		
발표평가	필수	⑧ 공고일 기준 해외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주택임차계약, 공공요금 납부영수증, 출입국사실증명서, 영주권 스캔본, 여권 내 비자페이지 스캔본 중 택1) *단, 여행자비자 등 단기체류의 거주는 제외	별도 안내	서류평가 통과기업 대상
		⑨ 창업기업 확인서(필요시)		
		⑩ 발표자료(PPT/PDF)		

* 대내·외 사정으로 서류(행정정보)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해당 오류로 인해 **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음**
(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)

5

평가 및 선정절차

□ **평가 절차** : 총 2단계(서류→발표)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

*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,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 또는 AC에서 안내 예정

<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(안) >

① 요건검토	② 서류평가	③ 발표평가	④ 최종 선정
지원자격 검토	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(1.5배수 내외 선정)	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(20분 내외)	선정 확정 및 (협약체결확약서 제출) 심의 후 최종 선정
'26.9월 중	'26.9월 중	'26.9월 중	'26.9~10월

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,
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
필요시 서류, 발표평가를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음

※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·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**평가 방법**

- ① **요건검토** : 창업기업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신청자격 등 판단
- ② **서류평가** : 신청서류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 및 발표평가 대상 확정
- ③ **발표평가** : 창업아이템(아이디어) 개발 동기 등 문제인식부터 해결방안, 실현가능성, 성장전략, 팀 및 글로벌 역량, 현지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
 -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(동 사업 신청자)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, 발표 및 질의응답(영문)을 통해 글로벌 진출 의지 등에 대해 심층 평가
 - * 평가시간 : 20분 내외 (발표 10분 이내 + 질의응답 10분 내외)
- ④ **최종선정** :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
 -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동사업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

- * 확약서 안내·교육(발표평가 대상자) → 확약서 배포(선정 예정자) → 확약서 수취
- ** 기간 내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(후보자)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

< 최종선정 대상자의 '협약체결확약서' 제출 >

- ※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(기업)는 '협약체결확약서' 제출 요청*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(마지막 날 17시까지,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 「동사업」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*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, 위 발송일 기준
- ※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할 경우,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(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)에서 '제외'됩니다.
- ※ 단,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에 이미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, 최초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(수행)이 가능합니다.
- ※ 제출한 '협약체결확약서'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-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, 창업기업별 창업 활동비*를 배정하여 최종 안내 예정

*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음

- ※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 또는 타국가에 배정할 수 있음

-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 등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

□ 평가지표

- 창업아이템(아이디어) 개발 동기 등 문제인식부터 해결방안, 실현 가능성, 성장전략, 팀 및 글로벌 역량, 현지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

*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,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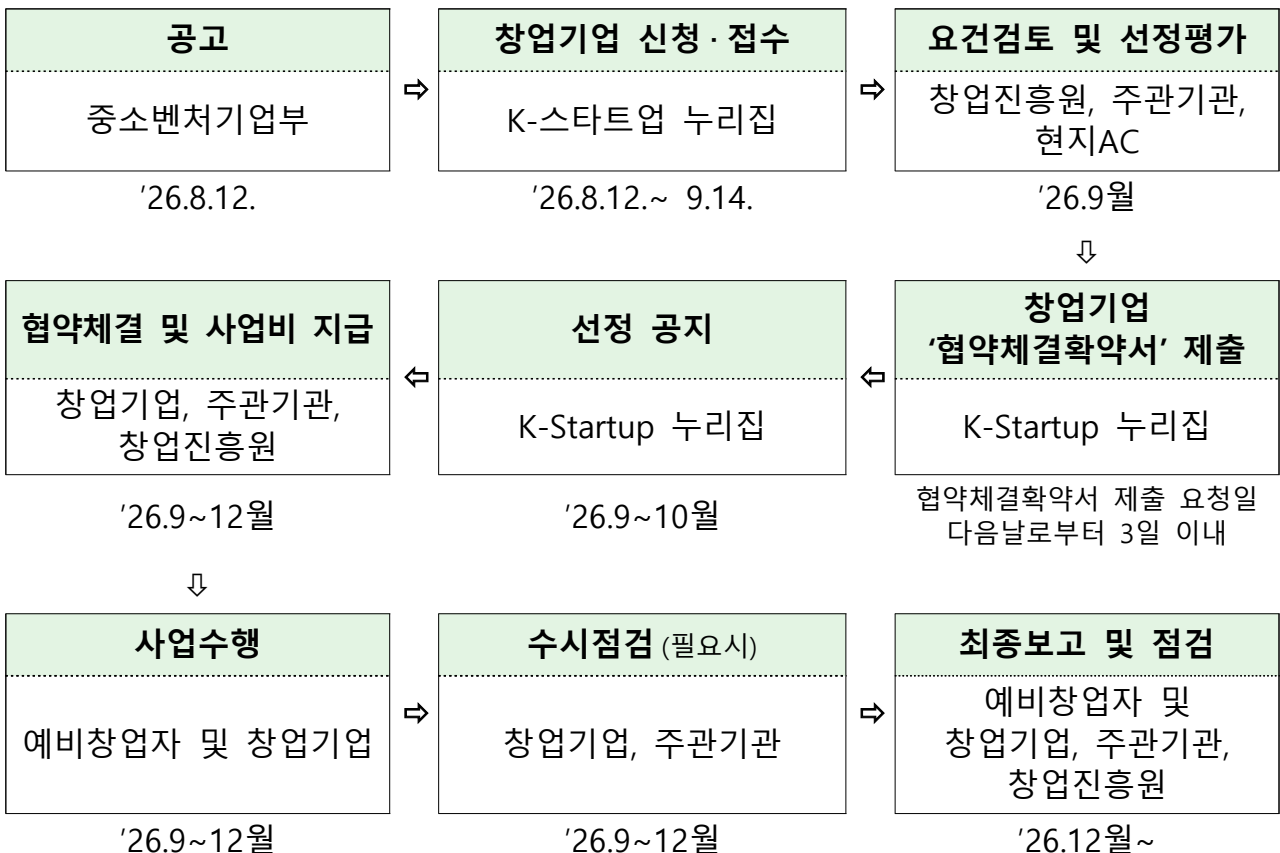
< 평가지표(안) >

평가항목	세부 내용
문제인식	• 창업아이템(아이디어) 개발(고안) 동기(문제인식), 해결방안(필요성) 등
실행가능성	•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(개선) 방법, 경쟁력 확보 방안 등
성장전략	• 창업아이템(아이디어)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, 자금조달 방안 등
팀 역량	• 창업자 및 팀의 전문성, 역할 구성의 적정성, 글로벌 경험, 글로벌 환경에서의 실행 가능성 등
글로벌 역량	• 글로벌 시장 진출 준비, 글로벌 네트워크, 글로벌 진출 전략의 구체성·실효성 등 • 사업 관련 규제 대응 준비성·역량, 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도 및 고객 검증 여부 등
현지 적합성	• 본 프로그램과 기업의 사업 방향 및 목표 간의 적합성, 성과창출 가능성 등

* 위 지표 외 현지AC의 별도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선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

□ 사업 운영일정(안)

※ 세부 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◆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
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「형법」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 등에 따라 **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**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**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대표자, 창업기업)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-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32조 및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**해당자를 고발 조치**할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(창업진흥원 등)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(3년)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

- *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,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, 선정취소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
- ** 동일·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
- '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글로벌 창업사업화 지원사업,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동시수행 (협약체결) 불가. 단, '25년도 이전의 글로벌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- * (주의)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,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, 최초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,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- * 선정 완료 후 공동·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는 '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, 멘토단으로 참여 불가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(선정) 대상에서 제외
-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,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-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(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) 1회에 한하여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
- 주관기관 또는 AC는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,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의 선정 절차(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)에서 '제외' 처리됨
 - 단,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에 이미 '협약 체결확약서'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, 최초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(수행) 가능
-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,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 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창업기업의 창업활동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'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'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·운영됨
- 동 사업의 수시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
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,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,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
-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'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'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 하여야 함*(예비창업자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함)
- *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
- 창업기업의 경우, 협약기간 동안 국내·외 법인을 유지해야함

7

기타사항

□ 문의처

- (시스템 문의) 국번없이 1357
- (사업 문의) 전문기관 및 홈페이지

구분	담당기관	담당자 연락처
주관기관	미정	추후안내
전문기관	시스템 문의	(국번없이) 1357
	창업진흥원(한국 본사)	044-410-1886, 7
	창업진흥원(실리콘밸리 사무소)	669-206-9448
	창업진흥원(뉴욕 사무소)	332-272-0524
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싱가포르 사무소)	+65-6243-2009
이메일	startupsforallglobal@kised.or.kr	

참고 1

창업 여부 기준표 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)

신청기업구분	상세 구분			창업여부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	창업 기본요건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		불인정
		이종		창 업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	불인정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창업 시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불인정
부도/파산 - 2년 초과			창 업	
부도/파산 - 2년 까지	불인정	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후 창업 시	-		창 업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	창업 기본요건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창업 시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불인정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	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불인정
	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 과 또는 최대주주	불인정
	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 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
	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	불인정
	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	불인정
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불인정	
	이종		창 업	

※ 위 표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(창업의 범위)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,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* 국가법령정보센터 : law.go.kr

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
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*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: kssc.kostat.go.kr

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
※ 신청가능 여부 : "창업여부"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서 위 기준에 해당. 단,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만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 가능

※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,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

참고 2

지원 제외 대상 업종

- ▶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NO.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카지노 운영업	91242
4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5	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참고 3

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

NO.	글로벌 창업지원사업명	소관 부처
1	·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	중소벤처기업부
2	·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(GMEP)	중소벤처기업부
3	· 스타트업 벤처캠퍼스(SVC) 사전 프로그램(舊 KSC프로그램형)	중소벤처기업부
3	·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지원사업	과학기술정보통신부
4	·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	과학기술정보통신부
5	· K-Global 해외진출지원사업	과학기술정보통신부
6	· DNA 융합 제품·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사업	과학기술정보통신부
7	· AI·디지털 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	과학기술정보통신부

* (주의)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,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,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